

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9. 16.(수) 10:2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송도균 부위원장
이경자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에 관한 건 (2009-43-207)

- 최재유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(주)와이티엔의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.

-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 법인

법인명	채널명	콘텐츠 공급분야	최초 승인일	대표자	편성 책임자	최대주주 (지분율)
(주)와이티엔	YTN	보도(종합보도)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	'94.9.14	배석규	배석규	한전케이디엔 (21.43%)

2)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09-43-208)

- 최재유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.

- 개정안 주요 내용

- (외국인의 콘텐츠사업자 주식소유 제한 완화)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(49%) 대상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 (안 제9조)

※ 2009년도 규제개혁 과제 (국무총리실, '09. 6월)

- (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분쟁조정 및 기술기준 근거 마련)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송법 제35조의3의 '방송분쟁조정위원회'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품질보장을 위해 IPTV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의 근거조항을 신설 (안 제14조)

※ 현재 시행중인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」 고시는 명시적인 기술기준 제정근거 조항에 근거하지 않고, 같은 법의 정의(제2조) 규정 등 개별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음

- (기존 콘텐츠사업자의 이중규제 폐지)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·등록하거나 승인·허가를 받은 기존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해, 신고·등록·승인 간주조항 신설 (안 제18조)
- (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준용규정 신설)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 내용을 방송법 제9조의2의 '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'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상향 입법 (안 제18조의2)

3) 「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09-43-209)

o 최재유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.

o 개정안 주요 내용

- (재허가 심사기준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정리)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 심사기준(시행령 제4조제2항)을 법으로 상향 입법(법 제5조의2 신설)함에 따라, 중복되는 현 시행령의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정리 (안 제3조 및 제4조)

※ 상향 입법된 재허가의 심사 기준 : ①이전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,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②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,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횟수와 그 이행 여부

- (서비스 개시기간 연장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정리)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국서비스 개시기간 연장사유(시행령 제5조제2항)를 법으로 상향입법 (법 제6조제2항 단서 신설)함에 따라, 중복되는 현 시행령의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정리 (안 제5조)

※ 상향 입법된 전국 서비스 연장 조항 :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문의 기간(3년)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(1년)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4) (주)씨엠비 전남방송 재허가에 관한 건 (2009-43-210)

o 조영훈 뉴미디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(주)씨엠비 전남방송에 대하여 심의하고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는 것을 원안대로 의결함.

o 재허가 조건

-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%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함.
- 매 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.
- 재허가 기간 동안 이사회 전체구성원의 과반수를 방송전문가·변호사·회계사·방송구역 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 사외이사로 구성·운영하여야 하고 이사회 개최에 따른 이사회 의사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.
-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결과를 2009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.
-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개선과 증자, 전송망 고도화 및 디지털방송 투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함.
-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계획을 이행하고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.
- 2010년 5월 31일까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여야 하고, 2010년 6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.

5) (주)넥센의 (주)KN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행위에 관한 건 (2009-40-206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넥센이 2009. 4. 30.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넥센타이어(주)로부터 방송사업자인 (주)KNN의 주식 20.58%를 매수하여 최대액출자자가 됨으로써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 방안을 심의하고, 아래와 같이 의결함.
- 주요 내용
 - (주)넥센은 넥센타이어(주)의 최대주주로서 계열회사 간의 거래이고, 방송법 위반이 법 해석상의 오류에 기인한 점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매수한 주식을 원상회복 하도록 시정명령하지 않고, 2009. 6. 16. 제출한 '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'에 대해 추후 심사하여 처리하되,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소정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함.

사. 보고사항

1)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관한 사항

-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통신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된 유·무선 결합상품 마케팅 시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원안대로 접수함.
- 주요 내용
 - (자사 고객정보 활용방안)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'결합상품 홍보'를 위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 사용 가능
 - ('제3자 제공'에 동의한 고객정보 활용방안)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타사(제3자)의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서비스제공자와 해당 타사(제3자)의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가능
 - (기 타) (구)KT는 (구)KTF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자사 상품명(KT-PCS)으로 재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(구)KT의 상품군에 이미 이동통신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됨.

사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국회 일정이 확정된 후에 별도 정하기로 함.

6. 폐 회 (11:35)